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3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녀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공제율 상향(백선회의원안) ...	3

I. 개요

1.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63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3. 20.
- (3) 회 부 일 : 2026.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2항 제5호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공제율 상향(백선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2항)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신 설> - 그 밖의 의료비: 15% ○ 공제한도: - 다음 경우의 의료비 : 한도 없음 · 거주자 본인 의료비 ·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 · 65세 이상자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신 설>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 자녀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공제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0세 이하 자녀 의료비: 1명인 경우 20%, 2명인 경우 25%, 3명 이상인 경우 30%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 다음 경우의 의료비 : 한도 없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0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백선회의원안 2026. 3. 20. 제출(의안번호 17630)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¹⁾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동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거주자·6세 이하인 자·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²⁾.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 참고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받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동 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세제혜택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2014년 세법개정으로 공제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음. 또한,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었음. 또한, 2023년 세법개정으로 6세 이하인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음.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기준 1조 5,118억원 수준이며, 2025년에는 1조 5,920억원, 2026년에는 1조 6,762억원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11,121	12,088	13,634	15,118	15,920	16,76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고, 자녀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자녀수가 많다고 동일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 부담이 높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미적용하고 있다는 점, 다자녀 가구 지원은 자녀세액공제 또는 아동수당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³⁾은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2025년 기준 0.80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3)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그 한도를 삭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에서 의료비 지출액 비중이 크지 않아 조세지출이 대규모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액 의료비 발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녀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78.9만원 중 사교육비가 30.1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비는 2.8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약 3.5% 수준에 불과함.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6세 이하인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고 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조세지출의 확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반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그 한도를 폐지하는 경우 중증·희귀질환 자녀가 있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자녀

에 대한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